# 대학원 교육학과 운영 내규

제정: 2008년 9월 22일
수정: 2018년 3월 1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적) 관련 내규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교육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① 학과 교육목적: 기존 교육학 이론의 탐구 및 새로운 이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교육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배양하여 교육학의 이론적, 실제적 발전에 기여한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박사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장 과정 및 정원

제3조(학위과정), 제4조(연구과정, 공개강좌 등), 제5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6조(원격교육과정), 제7조(학과 및 입학정원), 제7조의2(계약학과 등) 관련 내규

**제3조 (학과명칭)**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인문사회계열) '교육학과'로 칭한다.

**제4조 (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5조 (개설 전공)** 교육공학및기업교육, 교육사회학및평생교육, 교육심리및학습컨설팅, 교육측정·평가및통계, 교육행정·정책및리더십의 5개 전공을 개설한다.

## 제3장 입학

제8조(입학시기 및 선발방법), 제9조(입학지원자격), 제10조(입학전형방법), 제11조(입학지원절차), 제12조(편입학), 제13조(재입학) 관련 내규

**제6조 (선발방법)**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며, 대학원 정원에 따라 추가모집으로 충원할 수 있다.

##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자퇴

제14조(등록), 제15조(등록한 학생의 권한), 제16조(수업료 등의 대체 및 반환), 제17조(휴학), 제18조(복학), 제19조(제적), 제20조(자퇴) 관련 내규

(관련 내규 없음)

## 제5장 수업

제21조(학기 등), 제22조(수업일수), 제23조(취득학점), 제24조(보충과목 이수), 제25조(수업연한), 제26조(학점당 이수시간), 제27조(재학연한), 제28조(학위과정 수료), 제29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0조(학점인정), 제31조(이수과목), 제32조(연계과정), 제33조(성적평가) 관련 내규

**제7조 (이수학점)** 각 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3학점(전공24학점 + 연구지도학점 9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연구논문을 선택할 경우에는 39학점(전공6학점 + 연구지도학점 9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45학점(전공36학점 + 연구지도학점 9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연구지도학점은 전공세미나(I, II, III 등) 수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2~4학기에 신청한다.

**제8조 (보충과목 이수)**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준에 따라 정규학점 이외에 보충과목을 이수하여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①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 입학생, 석사학위 취득 후 전공을 변경한 박사과정 입학생, 학사학위 취득 후 전공을 변경한 석사과정 입학생, 편입학 이전의 전공을 변경한 편입학생

② 보충과목 이수 학점: 석사(최대 12학점), 박사(최대 24학점)

③ 보충과목 대체인정: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교육학과의 하위 학위 교육과정 교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학과주임교수에게 “하위과정 이수교과목 비교표”를 작성·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보충과목 학점 취득으로 인정한다.

**제9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성되며, 전공교수의 요청,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필요에 따라 개설·변경될 수 있다.

| 구분 | 전공 | 교과목명 |
|---|---|---|
| 공통 교과 | 연구방법 | 교육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론, 교육통계Ⅰ(초급), 교육통계Ⅱ(중급) |
| | 교육학 기초 | 교사론, 교육과정,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학개론 |
| 전공 교과 | 교육공학 및 기업교육 | 교육공학기초, 교수체제설계, 교수설계모형, 교수매체제작, 코스웨어설계 및개발, 교수학습이론, 교육공학연구방법론, 이러닝개발및활용, 사이버교육의실제, 수행공학, 뉴미디어와차세대학습환경,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및평가, 프로그램평가론, ID프로젝트관리론, 기업교육론, 교육공학 최신동향 세미나, 수업분석 및 수업컨설팅, 교육공학 연구 동향 세미나 |
| | 교육사회학 및 평생교육 | 교육사회학기초, 교육사회학연구, 교육사회학이론, 비교평생교육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대학확장연구, 교육과 문화, 교육과 사회화, 교육사회학연구방법론, 노인교육학연구, 사회계층과 교육,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성인심리학연구, 청소년교육연구,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정책연구, 성인학습 및 상담연구, 원격교육활용연구, 인간자원개발연구,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론, 노후생애설계, 유아통합교육연구, 평생교육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
| | 교육심리 및 학습컨설팅 | 교육심리학기초, 교육심리학연구, 학습이론, 발달심리, 학습동기, 지능및창의성, 심리학사, 성격및개인차, 교수·학습에대한인지과학적접근, 심리측정, 학습컨설팅개론, 동기와 교육 연구, 창의성 이론과 실제, 학습 전략 및 스타일 |
| | 교육측정·평가 및 통계 | 교육평가의 기초, 교육측정, 대규모교육자료분석, 고급교육통계, 실험설계, 중다회귀분석, 교육평가모형분석, 차별기능문항, 다변량분석, 다층자료분석, 고전검사이론, 교육자료분석, 검사제작, 교육기관평가, 준거참조평가, 다분문항반응이론, 검사동등화, 구조방정식모형, 인지진단평가, 교육평가세미나, 교육통계세미나 |
| | 교육행정·정책 및 리더십 | 교육행정학기초, 교육행정이론연구, 교육정책론, 장학이론, 비교교육행정론, 교육지도성이론, 교원교육론, 교육재정론, 교육정책분석 및 평가, 교육정책세미나Ⅰ, 교육정책세미나Ⅱ, 교육제도, 교육행정조직론, 학교경영론, 교육개혁론 |

## 제6장 전과 및 전공변경

제34조(전과 및 전공변경) 관련 내규

(관련 내규 없음)

## 제7장 자격시험

제35조(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제36조(통합과정의 자격시험) 관련 내규

**제10조 (종합학력시험 응시자격)** 종합학력시험의 응시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해당 학위과정의 이수 기준에 따라 전공학점(석사과정 18학점 이상, 박사과정 27학점 상) 취득

② 외국어자격시험 통과

※ 외국어자격시험 면제 기준: 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영어시험(TOEFL(PBT530점·CBT197점·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Opic IM2 이상) 기준점수 획득자와 대학원 학칙에 지정된 외국 수학 경험자

※ 비영어권 수학 경험자의 면제 여부 결정: 학과회의를 통하여 결정함

③ 연구윤리교육 이수

**제11조 (종합학력시험 시행)** 본 학과의 종합학력시험은 다음의 시행 규정을 따른다.

① 응시과목: 석사과정은 연구방법과목 중 1개와 본인의 세부전공 중 1개 과목, 박사과정은 연구방법과목 중 1개, 본인의 세부전공 중 1개, 그 외 세부전공 중 2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을 2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② 종합학력시험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에서 본인이 수강한 과목만 신청할 수 있다.

③ 합격기준: 합격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④ 종합학력시험 불합격 시 횟수에 관계없이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⑤ 종합학력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과목에 한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학기에 재응시한다.

⑥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한다.

⑦ 위의 1항(응시과목)은 2018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해당 시점 이전 입학자는 수강현황을 고려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 하에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

**제12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위 제10조의 종합학력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학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SSCI, SCOPUS 포함) 1편 이상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단, 해당 논문 1편당 1명만 면제)

② 게재 인정 일자: 입학일로부터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1주일 이전

③ 면제 승인 절차: 해당 학기의 종합학력시험 공지일로부터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1주일 이전에 게재 논문(원본 또는 별쇄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로부

터 종합학력시험 면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8장 학위논문

제37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과 변경), 제38조(논문작성), 제39조(논문심사 신청), 제40조(논문심사), 제41조(논문재심사), 제42조(논문제출) 관련 내규

**제13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위의 제12조에 의거 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지도 기간 확보를 위해 전공과목 18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종합학력시험 응시 이전에 계획서 발표를 먼저 할 수 있다.)

① 논문계획서 발표: 논문작성 이전에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학과교수 과반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논문계획서 발표회: 매학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회는 수업의 일환이므로 재학생들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② 논문계획서 승인 후 학과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문지도를 받도록 권장한다.

③ 소논문 게재: 박사학위의 경우 중간 심사 실시 이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교내 연구소의 전공 관련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종합학력시험 면제를 위한 논문과는 별도로 중간 심사 시 게재 논문의 원본 또는 별쇄본이나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④ 중간 심사: 박사학위의 경우 학과의 전임교수 2인 이상이 참석한 중간 심사에 통과하여야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석사과정: 종합학력시험→계획서 발표→논문작성→본심
  (석사과정의 경우, 종합학력시험 이전 계획서 발표 가능)
- 박사과정: 종합학력시험→계획서 발표→소논문 게재→논문작성→중간 심사→본심

**제14조 (석사학위 취득 방법의 선택)** 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석사학위 취득 방법을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① 학위논문 작성: 위의 제13조에 의거 기존과 같이 석사학위 논문 작성

② 연구논문 작성: 학위논문을 대체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2학기 말에 학위취득 방법을 연구논문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 연구논문 작성 자격: 39학점 이수(전공 30학점 + 연구지도 9학점) 및 평균 80점 이상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으로 전공 6학점을 추가 취득해야 함)

**제15조 (석사학위 연구논문 심사) 석사학위 취득 방법으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논문계획서 발표: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에도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와 1인의 교내 전공교수를 위촉하며, 학위논문 심사에 준하여 심사한다.

## 제9장 학위수여

제43조(학위수여), 제44조(학위종류), 제45조(명예박사학위 수여), 제46조(학위 취소) 관련 내규

**제16조 (학위의 종류)** 석사학위는 교육학석사, 박사학위는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7조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학위의 취소)** 대학원위원회 심의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지도교수 경위서, 논문작성자 자필경위서, 논문표절대조 확인서 등을 수령하고 대상자에게 학위 취소를 통보한다. 학위 취소 후, 학적상태는 수료로 기재되며 추후 본 대학원에서의 학위 취득은 불허한다.

## 제10장 상벌

제47조(장학금), 제48조(포상), 제49조(징계) 관련 내규

**제18조 (종합학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과목을 불합격 처리한다.
① 부정행위의 범위: 타인의 답안지 보기, 준비된 쪽지 감추어보기, 타인과 쪽지 주고받기, 교과서나 자료 보기, 스마트기기 사용 등
②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불합격 처리되며,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 제11장 학생활동

제50조(학생회) 관련 내규

**제19조 (전공대표의 임명 및 의사결정)** 세부 전공별 대표를 임명하여 전공대표를 중심으로 대학원 학생활동을 수행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전공대표가 해당 전공생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2장 직제

제51조(조직), 제52조(주임교수), 제53조(대학원위원회), 제54조(위원회 의결사항) 관련 내규

**제20조 (주임교수 위촉)** 학과 교수 중 1인이 대학원 주임교수로 위촉받아 대학원 학사 및 행정 업무에 관하여 책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학과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사항을 논의한다.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13장 보칙

제55조(준용), 제56조(시행세칙) 관련 내규

(관련 내규 없음)

### 부 칙 (2009. 5. 1.)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2.10.)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8.18.)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5.16.)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2.20.)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2.18.)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1.30.)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3. 1.)

**제1조 (시행일)** 이상의 내용은 2009년 3월 입학자부터 전면 시행하며, 전공에 따라 지도교수의 권한으로 필요사항의 시행 시일을 그 이전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7장 11조 종합학력시험의 응시과목 규정은 2018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논문계획서 발표 양식

▶ 연구목적을 분명히 하고 전체적인 연구설계와 방법 기술에 초점을 둘 것.
▶ 연구방법 절 이하 문장의 기술방식은 미래형으로 작성할 것.
▶ 서론과 연구방법 중심으로 15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제목**(가제)

(연구대상, 변인, 분석방법이 내포될 수 있도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문제제기, 관련 내용, 목적
2. 연구문제(구체적인 기술) 또는 가설 (필요한 경우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필요한 경우)
4. 연구의 범위 혹은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연구변인1 (개념, 정의, 이론, 관점 등)
2. 연구변인2 (개념, 정의, 이론, 관점 등)

.
.
.

3. 연구변인들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양적 연구의 예) ★★★★★ (구체적으로, 자세히)

1. 연구대상, 참여자, 피험자
2. 측정도구(프로그램 효과/상담효과 검증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소개)
3. 자료수집/실험 설계와 절차
4. 자료분석 방법

**Ⅳ. 기대되는 결과**

**Ⅴ. 참고문헌** (Key References List)

## [별표 2] 중간 심사 양식

▶ 분량의 제한을 두지 않되, 최소한 Ⅳ절(자료분석 결과)까지 발표할 것(논의 및 결론 추후 작성)

▶ 초록은 심사가 완료된 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의 편의를 위해 국문초록 작성

### 논 문 제 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또는 가설, 필요한 경우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필요한 경우)
4. 연구의 범위 혹은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병렬식으로 선행연구 요약을 나열하지 말고 연구자 고유의 '구성'을 가질 것)

1. 연구변인1 (개념, 정의, 이론, 관점 등)
2. 연구변인2 (개념, 정의, 이론, 관점 등)
3. 연구변인들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결과의 종합, 정리 및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 제시

**Ⅲ. 연구방법**(향후 Replication이 가능하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

1. 연구대상: 표집 방법과 구체적인 구성 비율(남여, 학년, 지역, 등) 제시
2. 측정도구: 제작 당시 신뢰도 및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를 가능한 모두 제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소개)
3. 자료 수집/실험 설계와 절차
4. 자료 분석 방법: 사용된 통계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해당 방법의 적절성과 특정 통계분석 방법 내의 기법, 구체적인 수식 등)

*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 절차 및 인터뷰나 면담 질문 등의 타당성 입증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문제 1
2. 연구문제 2
3. 연구문제 3

(질적 연구의 경우 면담/자료를 구조화하여 요약·제시하고 원자료는 부록으로 처리)

---

**Ⅴ. 논의 및 결론**

1. 연구요약 (연구의 전반적 요약)
2. 논의 (결과에 대한 사전연구와의 비교논의, 시사점)
3. 결론 (연구자의 주장, 시사점,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 중 인용한 모든 문헌 제시, 전공학회의 참고문헌 양식 참조)

**[부록]** (측정도구를 사용한 양적 연구이거나 질문/인터뷰를 사용한 질적 연구의 경우 사용 당시 그대로의 형식으로 제시)